기초사실

1992. 1. 일본방위청 방위연구소 도서관에서 일본군이 종군 위안부 징집에 직접 관여한 관계 공문서가 발견되었고, 일본국 정부가 진상 조사하여 그 결과를 발표한 1993. 8. 4. 고노 요헤이 관방장관의 담화에는 「금번 조사의 결과, 장기적이고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위안소가 설치되었으며 많은 위안부가 존재했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위안소는 당시 군당국의 요청에 의해 설치 운영되었으며, 위안소의 설치, 관리 및 위안부의 이송에 대해서는 구 일본군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에 관여했다. 위안부 모집에 대해서는 군의 요청을 받은 업자가 주로 담당하였으나, 그 경우도 감언, 강압 등에 의한,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모집된 사례가 많으며, 더욱이 관헌 등이 직접 이에 가담한 적도 있었던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위안소에서의 생활은 강제적인 상황하에서의 참혹한 것이었다. 또한, 전지(戰地)로 이송된 위안부의 출신지에 대해서는 일본을 제외하면 한반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당시의 한반도는 일본국의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모집, 이송, 관리 등도 감언, 강압 등에 의해, 총체적으로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라고 명시하였다.

또한 유엔 인권위원회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하여 일본국, 한국, 북한 방문 조사, 일본국, 한국, 북한으로부터 받은 관련 자료 조사, 위안부피해자들의 증언 등을 통해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수행하여 왔는바, 그 첫 번째 보고서인 1996. 1. 4.자 '라디카 쿠마라스와미 보고서'에서는, 2차 대전 때 강제연행된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일본국의 인권침해는 명백히 국제법상 위반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일본국에 대하여 정부차원의 손해배상, 일본정부가 보관 중인 모든 문서 및 자료의 완전한 공개, 서면에 의한 공적인 사죄, 역사적 사실을 반영하도

록 교육내용 수정, 범행자 확인 및 처벌을 내용으로 하는 권고안을 제시하였으며, 1996. 4. 19. 제52차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위 보고서의 채택결의가 있었다. 또한 1998. 8. 12. 유엔 인권소위원회(차별방지 소수자 보호 소위원회)에서는 위 쿠마라스와미 보고서의 내용이 보강된 특별보고관 게이 맥두걸의 일본정부의 법적 배상책임, 책임자 처벌을 골자로 하는 보고서가 발표되어 채택되었는데 위 '맥두걸 보고서'에서는 위안부제도가 성노예제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위안소를 강간수용소(rape center)로 규정하여 강제성을 확인하였고, 일본국의 책임자 처벌문제를 강조하면서 형사소추를 확보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며, 유엔사무총장은 일본정부로부터 최소한 연 2회 이상 진행사항을 보고받고, 유엔 고등인권판무관이 일본정부와 함께 책임자의 처벌 및 적절한 배상을 위한 패널을 구성하는 등 유엔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였고, 생존자들이 고령인 점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일본정부의 법적 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나아가 미국 연방하원은 2007. 7. 30. 만장일치로 일본군위안부 결의안을 채택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① 일본정부는 1930년대부터 제2차 세계대전 종전에 이르기까지 아시아 국가들과 태평양 제도를 식민지화하거나 전시에 점령하는 과정에서 일본 제국주의 군대가 강제로 젊은 여성들을 위안부로 알려진 성의 노예로 만든 사실을, 확실하고 분명한 태도로 공식 인정하면서 사과하고 역사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② 일본정부는 일본군들이 위안부를 성의 노예로 삼고 인신매매를 한 사실이 없다는 어떠한 주장에 대해서도 분명하고 공개적으로 반박하여야 한다. ③ 일본정부는 국제사회가 제시한 위안부 권고에 따라 현 세대와 미래 세대를 대상으로 끔찍한 범죄에 대한 교육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어 네덜란드 하원(2007. 11. 8.), 캐나다 연방하원(2007. 11. 28.), 유럽의회

(2007. 12. 13.)도 20만명 이상의 여성들을 위안부로 강제동원해 저지른 만행에 대해 일본정부의 공식사과와 역사적·법적 책임의 인정,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위안부 강제동원 사실을 현재와 미래의 세대들에게 교육시킬 것 등을 포함한 결의안을 순차로 채택하였으며, 유엔 인권이사회는 2008. 6. 12. 일본국 인권상황 정기검토를 통해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각국의 권고와 질의를 담은 실무그룹보고서를 정식으로 채택하였으며, 유엔 B규약인권위원회는 2008. 10. 30. 제네바에서 일본국의 인권과 관련된 심사보고서를 발표하고, 일본정부에 대해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법적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 다수가 수용할 수 있는 형태로 사죄할 것을 권고하였다.

범죄사실

피해자 이OO, 김OO, 김△△, 유OO, 강OO, 정OO, 박OO, 김□□, 김◇◇, 이△△, 이□□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로서, 사실은 일본국의 매춘부와는 달리,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일본군에 의해 위안부로 강제동원되어 그 감시 아래 전시 상황의 중국, 동남아 등지에 설치된 위안소에 갇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도 보장받지 못한 채 하루에 수십 명의 군인들을 상대하며 성적 쾌락의 제공을 강요당한 '성노예'에 다름없었을 뿐 본질적으로 매춘부가 아니었고, 일본국과 일본군에 애국적 또는 자긍적으로 협력하지 아니하였으며, 일본군은 위와 같이 설치된 위안소를 설치·운영하고, 위안부를 국외송출하는 과정에 광범위하게 개입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12. 서울 마포구 서교동 541-28에 있는 '뿌리와이파리' 출판사에서 「일본군에 의한 조선인 위안부 동원의 비강제성을 강조(일본군의 강제동원 또는 강제연행을 부정)하고, 조선인 위안부는 기본적으로 매춘

의 틀 안에 있는 여성이라거나 자발적으로 간 매춘부이고, 조선인 위안부가 일본제국의 일원으로서 일본국에 대한 애국심 또는 자긍심을 가지고 일본인 병사들을 정신적 신체적으로 위안하여 주는 위안부로 생활하면서 일본군과 동지적인 관계에 있었음을 나타내면서 "조선인 위안부의 고통이 일본인 창기의 고통과 기본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점을 먼저 알 필요가 있다.", "'위안'은 가혹한 먹이사슬 구조 속에서 실제로 돈을 버는 이들은 적었지만 기본적으로는 수입이 예상되는 노동이었고, 그런 의미에서는 '강간적 매춘'이었다. 혹은 '매춘적 강간'이었다.", "조선인 '위안부'를 지칭하는 '조선삐'라는 말에서는 조선인에 대한 노골적인 경시가 드러난다. 이 군인들이 그녀들을 이렇게도 간단히 강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녀들이 '창녀'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조선인'이었기 때문이다.", "1996년 시점에 '위안부'란 근본적으로 '매춘'의 틀 안에 있던 여성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간 매춘부'라는 이미지를 우리가 부정해온 것 역시 그런 욕망, 기억과 무관하지 않다.", "일본인·조선인·대만인 '위안부'의 경우 '노예'적이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군인과 '동지'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것은 조선인 위안부와 일본군의 관계가 기본적으로는 동지적인 관계 때문이었다.", "홀로코스트에는 '조선인 위안부'가 갖는 모순, 즉 피해자이자 협력자라는 이중적인 구도는 없다.", "그러한 정신적 '위안'자로서의 역할-자기 존재에 대한 (다소 무리한) 긍지가 그녀들이 처한 가혹한 생활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될 수도 있었으리라는 것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일이다.", "'조선인 위안부'는 피해자였지만 식민지인으로서의 협력자이기도 했다.", "그리고 적어도 '강제연행'이라는 국가폭력이 조선의 위안부에 관해서 행해진 적은 없다는 점.", "'위안부'들을 '유괴'하고 '강제연행'한 것은 최소한 조선 땅에

서는, 그리고 공적으로는 일본군이 아니었다.”」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의 사실이 적시된 「제국의 위안부」라는 책을 출판하고 그 무렵 전국 서점 등을 통해 배포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Ⅲ. 첨부

1. 변호인선임서 2부

범 죄 일 람 표

순번	책 쪽	내 용	비고
1	19쪽	센다는 '위안부'를, '군인'과 마찬가지로, 군인의 전쟁 수행을 자신의 몸을 희생해가며 도운 '애국'한 존재라고 이해하고 있다. 국가를 위한 군인들의 희생에 대한 보상은 있는데 왜 위안부에게는 없느냐는 것이 이 책의 관심사이자 주장이기도 하다. 그리고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런 센다의 시각은 이후에 나온 그 어떤 책보다도 위안부의 본질을 정확히 짚어낸 것이었다.	위안부가 일본국에 애국적 협력자 이었음을 표현
2	32쪽	'가라유키상의 후예.' '위안부'의 본질은 실은 바로 여기에 있다.	위안부의 본질이 매춘임을 표현
3	33쪽	'위안부'의 본질을 보기 위해서는 '조선인 위안부'의 고통이 일본인 창기의 고통과 기본적으로는 다르지 않다는 점을 먼저 알 필요가 있다.	〃
4	38쪽	그에 따라 업자에게 의뢰하는 경우도 있었겠지만, 일반적인 '위안부'의 대다수는 '가라유키상' 같은 이중성을 지닌 존재로 보아야 한다.	〃
5	38쪽	그러나 '위안부'들을 '유괴'하고 '강제연행'한 것은 최소한 조선 땅에서는, 그리고 공적으로는 일본군이 아니었다. 말하자면 수요를 만든 것이 곧 강제연행의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위안부 동원의 비강제성 강조 (강제동원 또는 강제연행 부정)
6	61쪽	그녀들이 '황국신민서사'를 외우고 무슨 날이면 '국방부인회'의 옷을 갈아입고 기모노 위에 띠를 두르고 참여한 것은 그래서였다. 그것은 국가가 멋대로 부과한 역할이었지만, 그러한 정신적 '위안'자로서의 역할-자기 존재에 대한 (다소 무리한) 긍지가 그녀들이 처한 가혹한 생활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될 수도 있었으리라는 것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일이다.	위안부가 일본국에 자긍적 협력자 이었음을 표현
7	62쪽	응모했을 때도 그랬지만, 이런 몸이 된 나도 군인들을 위해 일할 수 있다, 나라를 위해 몸바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네들은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자유로워져서 내지에 돌아가도 다시 몸 파는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성들은 군인들을 위해 온 힘을 다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몰론 돈도 벌고 싶었겠지만요.(26쪽) 물론 이것은 일본인 위안부의 경우다. 그러나 조선인 위안부 역시 '일본제국의 위안부'였던 이상 기본적인 관계는 같다고 해야 한다.	위안부가 일본국에 애국적 또는 자긍적 협력자 이었음을 표현

8	65쪽	가족과 고향을 떠나 머나먼 전쟁터에서 내일이면 죽을지도 모르는 군인들을 정신적·신체적으로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 역할. 그 기본적인 역할은 수없는 예외를 낳았지만, '일본 제국'의 일원으로서 요구된 '조선인 위안부'의 역할은 그런 것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사랑도 싹틀 수 있었다.	"
9	67쪽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곳에 이런 식의 사랑과 평화가 가능했던 것은 사실이고, 그것은 조선인 위안부와 일본군의 관계가 기본적으로 동지적인 관계였기 때문이었다. 문제는 그녀들에게는 소중했을 기억의 흔적들을 그녀들 자신이 "다 내삐렀'다는 점이다. "그것 놔두면 문제될까봐"라는 말은, 그런 사실을 은폐하려 한 것이 그녀들 자신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이기도 하다.	위안부가 일본군에 애국적 또는 자긍적 협력자로서 동지적 관계에 있었음을 표현
10	99쪽	버마의 양곤(랑군)에 있다가 전쟁 막바지에 폭격을 피해 태국으로 피신했던 이 위안부 역시 일본군의 안내로 일본까지 왔다가 귀국한 경우다. 이들이 '전쟁범인', 즉 전범들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된 이유는 이들이 '일본군'과 함께 행동하며 '전쟁을 수행'한 이들이었기 때문이다. 그건 설사 그들이 가혹한 성노동을 강요당했던 '피해자'라고 해도 '제국의 일원'이었던 이상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다.	위안부가 일본군에 애국적 또는 자긍적 협력자 이었음을 표현
11	112쪽	조선인 여성이 위안부가 된 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다른 경제활동이 가능한 문화자본을 갖지 못한 가난한 여성들이 매춘업에 종사하게 되는 것과 같은 구조 속의 일이다.	위안부의 본질이 매춘임을 표현
12	120쪽	위안부 문제를 부정하는 이들은 '위안'을 '매춘'으로만 생각했고 우리는 '강간'으로만 이해했지만, '위안'이란 기본적으로는 그 두 요소를 다 포함한 것이었다. 다시 말해 '위안'은 가혹한 먹이사슬 구조 속에서 실제로 돈을 버는 이들은 적었지만 기본적으로는 수입이 예상되는 노동이었고, 그런 의미에서는 '강간적 매춘'이었다. 혹은 '매춘적 강간'이었다.	위안부의 본질이 매춘임을 표현
13	130쪽	아편은 하루하루의 고통을 잊기 위한 수단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증언에 의하면 대부분은 '주인'이나 상인들을 통한 직접사용이었다. 군인과 함께 사용한 경우는 오히려 즐기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위안부가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에 있었음을 표현

14	137쪽	일본인·조선인·대만인 '위안부'의 경우 '노예'적이긴 했어도 기본적으로는 군인과 '동지'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다. 다시 말해 같은 '제국 일본'의 여성으로서 군인을 '위안'하는 것이 그녀들에게 부여된 공적인 역할이었다. 그들의 성의 제공은 기본적으로는 일본 제국에 대한 '애국'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위안부가 일본국에 애국적 협력자로서 동지적 관계에 있었음을 표현
15	144쪽	조선인 '위안부'를 지칭하는 '조선삐'라는 말에서는 조선인에 대한 노골적인 경시가 드러난다. 이 군인들이 그녀들을 이렇게도 간단히 강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녀들이 '창녀'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조선인'이었기 때문이다.	위안부의 본질이 매춘임을 표현
16	158쪽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그런 유의 업무에 종사하던 여성이 스스로 희망해서 전쟁터로 위문하러 갔다"든가 "여성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위안부를 하게 되는 경우는 없었다"(기무라 사이조)고 보는 견해는 '사실'로는 옳을 수도 있다.	위안부의 본질이 매춘임을 표현
17	160쪽	오히려 그녀들의 '미소'는 매춘부로서의 미소가 아니라 병사를 '위안'하는 역할을 부여받은 '애국처녀'로서의 미소로 보아야 한다(「화해를 위해서」).	위안부가 일본국에 애국적 협력자 이었음을 표현
18	160쪽	식민지인으로서, 그리고 '국가를 위해 싸운다는 대의명분을 가지고 있는 남성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민간인' '여자'로서, 그녀들에게 허용된 긍지 - 자기 존재의 의의, 승인-는 "국가를 위해 싸우는 병사들을 위로해주고 있다"(기무라 사이조)는 역할을 긍정적으로 내면화하는 애국심뿐이었을 수 있다.	〃
19	190쪽	한 개인으로서의 '위안부'의 또 다른 기억이 억압되고 봉쇄되어온 이유도 거기에 있다. 일본 군인과 '연애'도 하고 '위안'을 '애국'하는 일로 생각하기로 했던 위안부들의 기억이 은폐된 이유는 그녀들이 언제까지고 일본에 대해 한국이 '피해민족'임을 증명해주는 이로 존재해주어야 했기 때문이다. '위안부'들에게 개인으로서의 기억이 허용되지 않았던 것도 그 때문이다. 그녀들은 마치 해방 이후의 삶을 건너뛰기라도 한 것처럼, 언제까지고 '15살 소녀 피해자'이거나 '싸우는 투사 할머니'로 머물러 있어야 했다.	〃

20	191쪽	그러나 국가가 군대를 위한 성노동을 당연시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에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았던 이상 그것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또 강제연행과 강제노동 자체를 국가와 군이 지시하지 않는 이상(일본군의 공식 규율이 강간이나 무상노동, 폭행을 제어하는 입장이었던 이상) 강제연행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일본 국가에 있다고는 말하기 어려운 일이다. 다시 말해 위안부들에게 행해진 폭행이나 강제적인 무상노동에 관한 피해는 1차적으로는 업자와 군인 개인의 문제로 물을 수밖에 없다.	위안부 동원의 비강제성 강조 (강제동원 또는 강제연행 부정)
21	205쪽	그러나 실제 조선인 위안부는 '국가'를 위해서 동원되었고 일본군과 함께 전쟁에 이기고자 그들을 보살피고 사기를 진작한 이들이기도 했다. 대사관 앞 소녀상은 그녀들의 그런 모습을 은폐한다.	위안부가 일본국에 애국적 협력자 이었음을 표현
22	206쪽	그녀들이 해방 후 돌아오지 못했던 것은 일본뿐 아니라 우리 자신 때문이기도 했다. 즉 '더럽혀진' 여성을 배척하는 순결주의와 가부장적 인식도 오랫동안 그들을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한 원인이었다. 그러나 거기에 있는 것은 단지 성적으로 더럽혀진 기억만이 아니다. 일본에게 협력한 기억, 그것 역시 그녀들을 돌아오지 못하도록 만든 것이 아니었을까. 말하자면 '더럽혀진' 식민지의 기억은 '해방된 한국'에는 필요하지 않았다.	위안부가 일본국에 애국적 또는 자긍적 협력자 이었음을 표현
23	206쪽	그런 한, '피해자' 소녀에게 목도리를 둘러주고 양말을 신겨주고 우산을 받쳐주는 사람들이, 그녀들이 일본옷을 입고 일본이름을 가진 '일본인'으로서 '일본군'에 협력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똑같은 손으로 그녀들을 손가락질할지도 모른다.	〃
24	207쪽	협력의 기억을 거세하고 하나의 이미지, 저항하고 투쟁하는 이미지만을 표현하는 '소녀'상은 협력해야 했던 '위안부'의 슬픔은 표현하지 못한다.	〃
25	208쪽	홀로코스트에는 '조선인 위안부'가 갖는 모순, 즉 피해자이자 협력자라는 이중적인 구도는 없다.	〃

26	215쪽	그러나 일본 정부는 사죄했고 2012년 봄에도 다시 사죄를 제안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정대협이 주장하는 국회입법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다. 그 이유는 1965년 조약, 그리고 적어도 '강제연행'이라는 국가폭력이 조선인 위안부에 관해서 행해진 적은 없다는 점, 있다고 한다면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사례여서 개인의 범죄로 볼 수밖에 없고 그런 한 '국가범죄'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점에 있다.	위안부 동원의 비강제성 강조 (강제동원 또는 강제연행 부정)
27	246쪽	1996년 시점에 '위안부'란 근본적으로 '매춘'의 틀 안에 있던 여성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위안부의 본질이 매춘임을 표현
28	265쪽	조선인 위안부는 같은 일본인 여성으로서의 동지적 관계였다.	위안부가 일본국과 동지적 관계에 있었음을 표현
29	265쪽	그 이유는 '조선인 위안부'가 '전쟁'을 매개로 한, 명확히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로 나눌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식민지배하에서 동원된 '제국의 피해자'이면서, 구조적으로는 함께 국가 협력(전쟁 수행)을 하게 된 '동지'의 측면을 띤 복잡한 존재였기 때문이었다.	위안부가 일본국에 협력자로서 동지적 관계에 있었음을 표현
30	291쪽	'조선인 위안부'란 "이렇게 해서 조선이나 중국의 여성들이 일본의 공창제도의 최하층에 편입되었고, 아시아 태평양전쟁기의 '위안소'의 최대 공급원"(110쪽)이 되면서 생긴 존재였다.	위안부의 본질이 매춘임을 표현
31	294쪽	그들이 그렇게 전쟁터에까지 함께 가게 된 건 똑같이 '일본제국'의 구성원, '낭자군'으로 불리는 '준군인' 같은 존재였기 때문이다.	위안부가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에 있었음을 표현
32	294쪽	그녀들이 '낭자군'이라고 불렸던 것은 그녀들이 국가의 세력을 확장하는 '군대'의 보조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

33	294쪽	'조선인 위안부'는 피해자였지만 식민지인으로서의 협력자이기도 했다.	위안부가 일본국에 협력자 이었음을 표현
34	296쪽	그리고 '자발적으로 간 매춘부'라는 이미지를 우리가 부정해 온 것 역시 그런 욕망, 기억과 무관하지 않다.	위안부의 본질이 매춘임을 표현
35	306쪽	중국이나 네덜란드와 같은 일본의 적국 여성들의 '완벽한 피해'의 기억을 빌려와 덧씌우고, 조선 여성들의 '협력'의 기억을 벗겨낸 소녀상을 통해 그들을 '민족의 딸'로 만드는 것은, 가부장제와 국가의 희생자였던 '위안부'를 또 다시 국가를 위해 희생시키는 일일 뿐이다.	위안부가 일본국에 협력자 이었음 표현